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5376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박경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의환, 권용덕

변론 종결 2021. 2. 26.

판결 선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7. 11. 16.자 수익권근질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제1항 기재 수익권근질권 설정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C에 2007. 2. 22. 53억원, 2008. 8. 22. 10억 원, 2010. 5. 24. 10억 원, 2011. 5. 27. 9억 원을 각 연 이율12%, 변제기 2013. 2.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다. A은 위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27.부터 2008. 8. 22.까지 3회에 걸쳐 C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채무자 C, 채권최고액 합계 8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10. 15. D과 위탁자 및 수익자를 C, 수탁자를 D, 1순위 우선수익자를 A, 신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09. 10. 15.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의 1순위 수익권리금액은 현재 34억 7,000만 원이다.

다. C은 2012. 9. 24.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C 대표이사 E(피고 대표이사 F의 모친이다)는 2015. 6. 5. 발행인을 C으로 하여, 1 F에게 액면금 29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2015년 제171호), ② G에게 액면금 45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2015년 제172호), ③ H에게 액면금 44억 원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어음공정증서(2015년 제173호)를 각 작성 ·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 F, G, H과 전항과 같은 F 등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맺었다. F, G, H의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2017. 11. 3.경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16. C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초한 C의 수익권1)에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수익권근질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다. 근질권의 피담보채권과 담보 한도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기왕에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를 135억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계약 제1조), 입질되는 신탁수익권의 범위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및 그 이후 C이
수익자로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되는 신탁수익권 및 이에 갈음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계약 제2조).

사.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A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20. 2. 6.자를 기준으로 위 채무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신탁계약상 1순위 수익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하더라도 일반채무로
10,523,463,334원이 잔존한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가 C과
맺은 2017. 11. 16.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이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근질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4. 24.에는 이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근질권 설정계약 체결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상승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고, C이 피고에게
수익권근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우선변제권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판결 참조).

2)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20. 4. 24.로부터 1년 이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사정을 통지받음으로써,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20. 2. 3. 무렵에 이르러서야 위 근질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은 2019. 12. 30.경 채권자인 원고에게 'C의 채무 약 217억 원 중 135억원을 일시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과 관련한 제안서(갑 제12호증의 1)를 작성·교부하였다. 위 제안서에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에 관하여 'C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 135억 2,00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질권의 설정 주체, 설정일, 설정 경위 등 구체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나) C은 2020. 2. 3.경 원고에게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과 관련한 제안서(내용수정 및 보충)'라는 제목으로 전항의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을 추가 설명하였다. 위 제안서에서 C은 'B의 근질권 설정경위'라는 제목 하에 C이 G, H, F에게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 피고가 G, H, F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C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피고의 근질권 135억 2,000만 원'을 명시하였다. C이 2020. 2.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 것은 그때까지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① C이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근접한 2020. 2. 6.경 A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로 원금 7,300,000,000원, 이자 14,768,783,253원 합계 22,068,783,253원을 부담하는 사실, 2위 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총 8,190,000,000원이 담보되는 사실, 3 위 채무 중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수익권으로 3,470,000,000원이 담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용금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408,783,253원(= 22,068,783,253원 - 8,190,000,000원 - 3,470,000,00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채무초과상태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나)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2017. 11.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뿐인데, 그 가액은 2019. 9.경 20,521,160,600원으로 감정된 점, C은 2020. 12. 및 2021. 2.경 원고에게 제출한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과 관련한 제안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54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적극재산 총액은 약 2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2) C은 2020. 2. 6.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약 39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은 약 615억 원(= 이 사건 차용금 약 220억 원 + 별도 차용금약 395억 원)에 이른다.

(3) C은 2018. 8. 13.경 더 이상의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54호로 법원파산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C이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부동산 시가가 변론종결일 무렵 C의 소극재산인 61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나) C이 2017. 11.경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던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신탁계약 등으로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일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은 C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G, H, F이 2015.경부터 갖고 있던 C에 대한 금전채권을 인수하였을 뿐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전후로 C에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 C의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맺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 관하여 2017. 11. 16. 체결된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D에 위 수익권근질권 설정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심현근, 판사 전훈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용인시 기흥구 I 대 16,552㎡ 중 16,552분의 8,264 지분

2. 건물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용인시 기흥구 I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및 세멘벽돌조 슬라브층 3층 공장 및 물탱크

1층 997.92㎡

2층 997.92㎡

3층 47.52㎡

지하 공장 570.24㎡

세멘벽돌조 슬라브층 평가건 사무실 100.8㎡, 끝.

1)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중 신탁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수탁자는 당해기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신탁수익은 현물로 교부한다.